

괴정4동삼창프라자건축물신축에따른피해구제요망에대한청원

의안 번호	101
----------	-----

소개년월일 : '97. 11. 28

소 개 의원 : 구태회의원

□ 주 문

괴정4동 1120-29번지 일원에 (주)삼부종합건설에서 시공하는 삼창프라자 건축물 신축과정에서 터파기작업의 무리한 시공으로 부근주택 등의 침하 또는 균열 등의 피해구제 조치 요망사항

□ 주요골자

- 상기 건축물 신축지역에 지하3층의 H빔작업과 터파기 작업의 무리한 시공으로 청원인들의주택 및 부근의 주택까지 침하 또는 균열로 붕괴 될 위험에 있어
- 그간 수차례 사하구청장에게 피해대책을 위한 진정을 하였으나 피해 보상등 조치가 제대로 수반되지 않는 실정임.
- 따라서 청원인의 피해를 구제하고 대형참사를 막을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요망하는 사항임.

□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65, 66, 67, 68조
- 사하구의회 청원심사 규칙

※ 본청원건은 제62회정기회에서 이번회기로 심사연기건임